

제306회 시의회 임시회

2022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설명서

2022. 03. 31

균형발전본부

보고 설명서

〈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1분기 예산전용〉

「균형발전본부 1분기 예산전용」에 대하여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.

균형발전본부 1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,

‘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’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의 관리운영을 자치구에 이관할 계획이었으나, 관련 협의 장기화로 인해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 및 시설운영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허용범위(90일) 내 위·수탁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.

이에, 서울역일대 거점시설의 주민맞춤형 운영 방안 마련 및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편성 예산 중 사무관리비 70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.

당초 의회에서 심의·예결해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에 의거하여 예산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 드립니다.

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.

2022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, 2022회계연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□ 예산전용 내역

- (감)사무관리비 70백만원 → (증) 민간위탁금 70백만원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		예산 현액	전용액		전용 후 예산현액
부서명	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소계						1,152,009	70,000	△70,000	1,152,009
도심권 사업과	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도심구현	도심 역사문화 자원관리	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사업 추진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201-01)	1,152,009	-	△70,000	1,082,009
				민간위탁금 (307)	민간위탁금 (307-05)	-	70,000	-	70,000

□ 전용사유

- 「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」에 의거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의 주민 맞춤형 운영을 위한 자치구로의 관리 이관을 추진 중에 있으나, 관련 협의 장기화로 행정절차 이행 및 시설운영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(90일) 내 위·수탁 기간 연장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

- 서울역일대 거점시설(8개)의 자치구 관리 이관 추진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에 ‘민간위탁금’을 미반영하였으나, 기존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전 자치구와의 이관 협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른 위수탁기간의 연장으로 ‘사무관리비’에 포함 편성하였던 거점시설 운영 지원비 중 일부(70백만원)를 ‘민간위탁금’으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

※ 인건비(기본급, 퇴직급여충당금), 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) 등